

10. 바하마(Bahamas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분	2017	2019	비고
보험료율(가입자/자영자/사용자)	3.9% / 6.8% / 5.9%	3.9% / 8.8% / 5.9%	자영자 2% ↑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B\$33,800 / 없음	B\$34,840 / 없음	상한 B\$1,040 ↑
연금수급 개시 연령	65세	65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500주	500주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56년(비기여 노령연금), 1967년(장애에 대한 공공부조)
- **현행법** : 1972년(국민보험)

2 제도형태

- **사회보험 및 사회부조**

3 적용대상

- **사회보험**
 - 당연적용 : 근로자 및 자영자
 - 임의적용 : 가능
- **사회부조** : 바하마 거주 취약계층

4 재원조달

- **가입자**
 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
 - 주당 적용소득의 3.9%
 - 임의가입자는 주당 평균소득의 5%(가입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: 연 B\$34,840
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 : 없음
-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실업수당, 산재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출산장려금의 재원으로 사용됨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
 - 적용소득의 8.8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: 연 B\$34,840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 : 없음
 -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실업수당, 산재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
 - 적용 임금의 5.9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: 연 B\$34,840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 : 없음
 -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실업수당, 산재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
○ 정부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: 없음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(사회보험, 소득조사)

- 보험료 납부기간이 500주 이상인 65세 도달자
-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 500주 이상인 60세 도달자
- 연기연금 : 69세까지 연기 가능
- 국외거주자에 대한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

○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 : 보험료 납부기간이 500주 이상인 65세 도달자

○ 비기여 노령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65세 이상이고 사회보험 노령연금 수급요건 미충족

- 고용 종료 필수

○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정상 퇴직연령 미만으로, 영구적 근로불능 판정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150주 이상인 사람

○ 장애부조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장애 판정되고 사회보험 장애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

수급권이 없는 사람

○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사망 당시 사회보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수급권자이었던 경우
 - 수급권자(유족)
 - 배우자 : ① 사망자와 혼인 상태였고 장애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피부양배우자 ② 사망 당시 16세 미만(학생일 경우 21세,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)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부양 배우자 ③ 사망 당시 사망자의 자녀를 임신한 피부양 배우자
 - 자녀 : 16세 미만(학생일 경우 21세,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)의 피부양 자녀
 - 부모 : 장애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피부양 부모

○ 유족일시금(사회보험)

- 사망 당시 최소 15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
- 수급권자(유족)는 사망자와 적어도 1년 이상 혼인기간이 있으나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족배우자를 포함

○ 유족부조(사회부조, 소득조사)

- 사망자가 사회보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수급권자(유족)는 피부양 유족배우자, 16세 미만(학생일 경우 21세,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)의 피부양 자녀, 피부양 부모 포함

○ 장애급여(사회보험) : 보험료 납부기간이 50주 이상인 경우로서, 가입자나 가입자의 배우자 사망 시 지급

6 **급여종류별 지급액**

○ 노령연금(사회보험, 소득조사)

-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 인정기간 500주에 대하여 가입자 적용 임금의 30% + 500주 초과 기간 매 50주마다 1%씩 증액(최대 60%까지)
 - 적용임금 : 최소 26주의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진 최고 5년의 납부기간 중 주 평균소득에 기초하여 산정
 - 소득조사 : 가입자의 주당 소득이 B\$335 이상이면 연금 지급 정지
- 조기연금 : 65세 미만 매 1개월마다 0.58% 감액
- 연기연금 : 65세 초과 매 1개월마다 0.58% 증액(최대 35%까지)
- 최저 연금액 : 주당 B\$68.66

○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

- 납부 기간 50주마다 적용 임금의 6배를 일시금으로 지급
- 적용 임금 : 최소 26주의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진 최고 5년의 납부기간 중 주 평균소득에 기초하여 산정

○ **비기여 노령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** : 주당 B\$63.17

○ **장애연금(사회보험)**

- 가입자 급여의 16%에 150주 이상 기여한 기간에 대해서 매50주 마다 2% 가산, 500주 이상 기간에 대해서는 매50주마다 1% 가산
- 피보험자가 질병연금, 출산, 고용 또는 일시산재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기여한 것으로 인정, 특정 상황 하에서 입은 영구산재급여를 수급한 기간 또한 기여로 인정
 - 급여 산정을 위한 연 최고임금 : B\$34,840
 - 최저 연금액 : 주당 B\$74.16
 - 최대 연금액 : 가입자 적용 소득의 60%

○ **장애부조(사회부조, 소득조사)** : 주당 B\$63.17

○ **유족연금(사회보험)**

- 배우자연금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 지급
 - 최저 유족연금액 : 주당 B\$74.16
 - 연금액 상한 규정은 없음
- 고아연금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%를 각 자녀에게 지급(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급중인 경우에는 최대 5명까지,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0명까지)
 - 완전 고아에게는 각각 주당 B\$34.33 지급
 - 최저 고아연금액 : 주당 B\$30.21
 - 연금액 상한 규정은 없음
- 기타 유족연금
 - 수급권 있는 유족배우자나 고아가 없는 경우,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의 50%를 수급자격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
 - 최저 유족연금액 : 주당 B\$74.16
 - 연금액 상한 규정은 없음
- 모든 유족연금의 총합이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
○ **유족일시금(사회보험)**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년 치를 일시금으로 지급

○ **유족부조(사회부조, 소득조사)** : 18세 이상인 사람에게에는 주당 B\$63.17, 18세 미만인

자녀에게는 주당 B\$25.26 지급(완전고아는 B\$28.84)

- **장제급여(사회보험)** : 장례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최대 B\$1,810의 일시금 지급

7 관리운영기관

- **노동 및 국가보험부(Ministry of Labour and National Insurance)**

- <http://www.bahamas.gov.bs/labour>
- 전반적 감독

- **국가보험위원회(National Insurance Board)**

- <http://www.nib-bahamas.com>
-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
<2019년 ISSA 자료>